#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백혜련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632

발의연월일: 2024. 12. 18.

발 의 자:백혜련·천하람·정동영

김기표 • 서미화 • 이수진

김영환 · 오세희 · 민형배

문진석 • 이원택 의원

(11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임원의 결격사유로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이 법에따라 임원에서 해임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7조는 2017년 법 개정으로 삭제되어, 이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어떠한 것인지 알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.

또한,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배분 업무를 관장하는 바, 현재 규정된 결격사유 외에도 횡령 등 재산범죄를 저지른 자는 보다 엄격하게 임원 자격을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임원 결격사유를 「사회복지사업법」과 유사한 기준으로 하고, 횡령 등 재산범죄를 저지른 자의 경우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임원이 될 수 없 도록 하여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11조제1호 및 제3 호).

#### 법률 제 호

##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9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3. 「형법」 제347조, 제350조, 제351조(제347조 및 제350조의 상습 범만 해당한다), 제355조 또는 제356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사람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임원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11조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               | 개 정 안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제11조(임원의 결격사유) 다음 각 | 제11조(임원의 결격사유)            |  |  |
|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람은 모금회의 임원이 될 수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없다.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1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7조제   | 1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9조         |  |  |
| 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   | 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         |  |  |
| 당하는 사람              | 제1호의9까지의 어느 하나에         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| 해당하는 사람                   |  |  |
| 2. (생 략)            | 2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|  |  |
| <u>&lt;신 설&gt;</u>  | 3. 「형법」 제347조, 제350조,   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| 제351조(제347조 및 제350조     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| 의 상습범만 해당한다), 제35       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| <u>5</u> 조 또는 제356조의 죄를 범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| 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        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| 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         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| 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        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| 아니한 사람                    |  |  |